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년월일 : 2007. 2.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6.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신설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관련 위원수 조정(안 제14조)

- 위원회 구성인원 중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 민간전문가”가 1/3이상으로 구성되도록 위원수 조정

나. 「위원회의 기능」 내용 추가(안 제15조)

- 위원회의 기능 중 종전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던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추가

다.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내용 수정(안 제23조)

- 종전에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하도록 수정

3. 개정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정 2005.08.04, 법률 제7664호)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및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정 2005.12.28, 대통령령 제19197호)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4. 조 례 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07.01.11. ~ 2007.01.31(특이사항 없음)
- (2)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7.02.14)
-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4조제4항제1호중 “3명”을 “2명”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폐기물처리시설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 2명”을 “기금운용 및 기금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3명”으로 한다.

제15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안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23조제1항중 “매 회계연도마다”를 “회계연도마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금운용계획서와”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매 회계연도마다”를 “회계연도마다”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③(생략)	①~③(현행과 같음)
④(생략)	④(현행과 같음)
1. 구 본청의 국장 3명	1. 2명
2. (생략)	2.(현행과 같음)
3. <u>폐기물처리시설 관련분야에 전문지식 이 있는 외부인사 2명</u>	3. <u>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3명</u>
⑤~⑥(생략)	⑤~⑥(현행과 같음)
제15조(위원회의 기능)(생략)	제15조(위원회의 기능)(현행과 같음)
1. <u>기금운용계획안</u>	1. <u>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안</u>
2. <u>기금결산보고서안</u>	2. <u>기금운용의 성과분석</u>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제2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2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 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회계연도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 여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마포구의회에 <u>제출하여야 한다.</u>	②.....기금 운용계획안과.....회계연도마다.....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